

존중이 일상이 되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

2026년 인권경영 추진계획

【경영기획팀】



2026년 인권경영 추진계획(요약)

◇ 전년도 인권영향 점검·진단 결과를 반영한 개선과제 이행과 예방·구제 체계 보완을 통해 진흥원 인권경영 운영체계를 정착하고자 함

□ 관련근거

- 진흥원 「인권경영 이행 규칙」 제6조(인권이행계획의 수립)

□ 기본방향

- (운영체계 정착) 인권경영 추진체계 정비, 인권영향평가 및 인증 추진
- (예방·구제 강화) 신고채널 운영, 구제절차 홍보, 성고충 대응체계 보완
- (인권존중 확산) 맞춤형 인권교육, 상호존중 캠페인, 고객응대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

□ 주요 추진과제

전략방향	추진과제	주요내용
운영체계 정착	인권경영 운영 및 추진체계 정착	'26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, 인권경영위원회 운영, 인권경영 추진체계 정비
	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이행	'25년 인권경영 점검·진단 개선과제 조치 계획 수립·이행, '26년 인권영향평가 실시
예방·구제 강화	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및 구제절차 홍보 강화	온·오프라인 신고채널 운영, 이메일 창구 신설, 신고·구제절차 대내외 안내 및 홍보
	성고충 대응체계 및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체계 강화	성고충 대응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보완, 악성민원 대응기준 및 직원 보호조치 마련
조직문화 확산	맞춤형 인권교육 및 상호존중 문화확산 활동	대상별(관리자·담당자·상담원 등) 인권교육 운영, 상호존중의 날(매월 11일) 및 실천 다짐 캠페인 운영
	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인권경영 수준 관리	협력사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, 주요 협력사 이행여부 서면점검, 인권경영 인증 추진 및 정보공개

□ 추진일정

추진일정	추진시기
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인권경영추진계획 수립	6~7월
대상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및 협력사 인권보호 이행관리	6~12월
성고충 대응 규정 개정 및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체계 마련	7~11월
인권침해 신고 이메일 창구 신설 및 신고·구제절차 홍보	7~12월
상호존중의 날 지정·운영 및 캠페인	9~12월
'26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경영인증 추진	9~12월

순 서

I . 추진개요	1
II . 추진배경	1
III . 2026년 인권경영 추진전략	3
IV . 추진과제별 실행계획	4
1. 인권경영 추진체계 정착	4
2.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이행	5
3. 인권침해 신고채널 운영 및 구제절차 홍보 강화	6
4. 성고충 대응체계 및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체계 강화	8
5. 맞춤형 인권교육 및 상호존중 문화확산 활동	9
6.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인권경영 수준 관리	10
V . 추진일정	11

2026년 인권경영 추진계획

I. 추진개요

□ 추진목적

- 임직원, 사업 참여자, 협력기관, 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진흥원 인권경영 체계 정착
- '25년 인권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개선과제의 체계적 이행 및 인권침해 예방·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
-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권경영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 기능 확보 및 평가-개선-환류의 운영체계 마련

□ 관련근거

- 진흥원 「인권경영 이행 규칙」 제6조(인권이행계획의 수립)

II. 추진배경

□ 2025년 인권경영 추진실적 환류

- (인권경영 실행) 인권경영 실천헌장 선포, 정보공개 청구 대응 기반 마련, 청렴소리함 설치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위한 기반 보완
 - 인권존중 가치 공유, 투명경영 기반 확보, 오프라인 신고·의견수렴 채널 보완
- (조직문화 점검) 조직문화진단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유로 직장 내 괴롭힘·갑질 예방 필요성과 개선과제 확인
 - 직장 내 괴롭힘·갑질 예방 필요성 확인, 신고채널 인지도 및 제도 신뢰도 제고 과제 도출

- **(성고충 대응체계 점검)**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및 개선 권고 조치계획 제출
 - 성희롱·성폭력 대응절차, 고충상담창구, 온라인 신고창구, 2차 피해 방지체계 보완 필요사항 확인
- **(인권영향평가 실시)** 기관 첫 인권영향평가 실시, 기관운영 및 주요 사업 인권 리스크 점검
 - 인권경영위원회 운영, 인권교육체계 정비, 협력사 인권보호, 감정 노동자 보호 등 개선과제 도출

□ **2026년 인권경영 환경 분석**

- **(대외환경)** 정부 국정과제 및 국제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경영 이행 요구 확대
 - 국가인권위원회 중심 인권선진국 과제,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, 사회적 책임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존중 정책 요구
- **(제도환경)** 인권영향평가, 구제절차, 인권경영 운영실적 공개 등 인권경영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요구 지속
 - 인권영향평가 결과 환류, 신고·구제절차 운영, 개선과제 이행관리 등 실행 중심 관리 필요
- **(사업환경)** 일자리, 기업지원, 사회연대경제, 청년·신중년 지원 등 시민·사업 참여자 점점 사업 운영
 - 사업 참여자, 협력기관, 계약상대자, 민원인 등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관점 반영 필요
- **(내부여건)** 인권경영 제도 기반 마련 이후 실제 운영·점검·환류체계 정착 초기 단계
 - 기존 제도 작동 여부 점검, 개선과제 이행관리 중심 운영 필요

III. 2026년 인권경영 추진전략

□ 중점 추진방향

- (운영체계 정착) 인권경영 이행 규칙에 따른 연간 인권경영 추진 계획 수립, 인권경영위원회 운영, 추진실적 관리·환류체계 정착
- (예방·구제 강화) 신고채널, 고충상담창구, 청렴소리함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및 피해자 보호체계 보완
- (인권존중 확산) 직장 내 괴롭힘·갑질·성희롱·성폭력 예방,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,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관점 반영

□ 2026년 인권경영 전략체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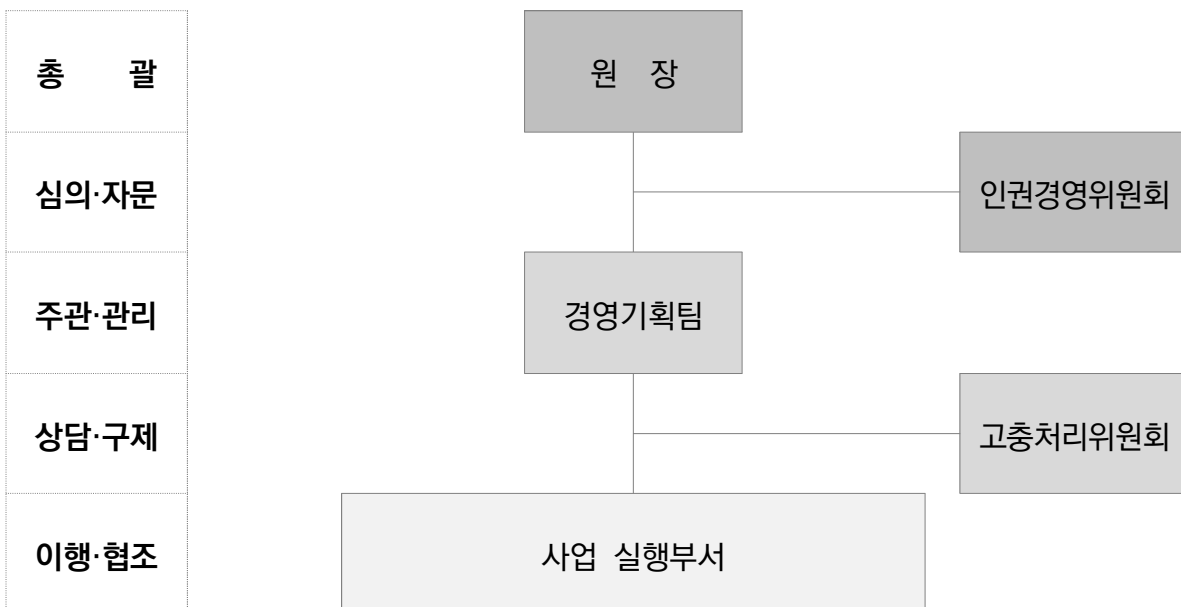
비 전	존중과 보호로 신뢰받는 인권경영 실현		
목 표	인권 침해사고 제로의 우수기관 달성		
전략방향	인권경영 운영체계 정착	인권침해 예방·구제체계 강화	인권존중 조직문화 확산
추진과제	• 인권경영 추진체계 정비 •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 과제 이행	•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및 구제절차 홍보 강화 • 성고충 대응체계 및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체계 강화	• 맞춤형 인권교육 및 상호 존중 문화확산 활동 •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인권경영 수준 관리
모니터링	내부점검	외부진단	신고채널
	• 추진과제 이행점검 • 개선과제 조치현황 점검	• 인권영향평가 • 자치단체 경영평가 • 인권경영 수준진단 및 인증 기준 사전점검	• (외부) 통합신고센터(누리집) • (내부) 고충처리위원회 및 인권신고게시판 • (내·외부) 청렴소리함
실행체계	규범·지침	총괄·심의	실행
	• 인권경영 이행 규칙 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관리규칙 •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관리규칙	• (총괄) 원장 • (심의·자문) 인권경영위원회	• (주관) 경영기획팀 • (이행) 사업실행 부서 • (상담·구제) 고충처리위원회

IV. 추진과제별 실행계획

과제 1 인권경영 추진체계 정착

□ 인권경영 추진체계 정비

-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, 인권경영위원회 운영,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과제 관리, 인권침해 상담·구제 등 인권경영 주요 기능별 역할 정비
 - (총괄) 원장, 인권경영 추진 총괄로서 추진계획 및 주요 개선방향 승인
 - (심의·자문) 인권경영위원회, 인권경영 추진계획 심의·자문,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 검토, 실천·점검·예방·구제 관련 자문 등
 - (주관·관리) 경영기획팀, 인권경영 주관부서로서 추진계획 수립·이행현황 관리, 위원회 운영,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과제 관리
 - (상담·구제) 고충처리위원회, 직원 고충 처리,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등 인권침해사안 접수·처리, 피해자 보호 및 후속조치 지원
 - (이행·협조) 사업 실행부서, 소관 개선과제 이행, 사업별 인권보호 사항 반영, 교육 참여 및 자료 제출 협조



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

- (구성인원) 총 5명(내부위원 2명, 외부위원 3명)
- (주요기능) 인권경영 추진계획,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·지문
 -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 - 인권경영 관련 제도·정책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 - 인권실천·점검,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주요사항
- (운영계획) 정기 연1회, 필요시 임시회의 운영*
 - * 원장 또는 위원장 필요시, 재적위원 1/3 이상 요구 시

과제 2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이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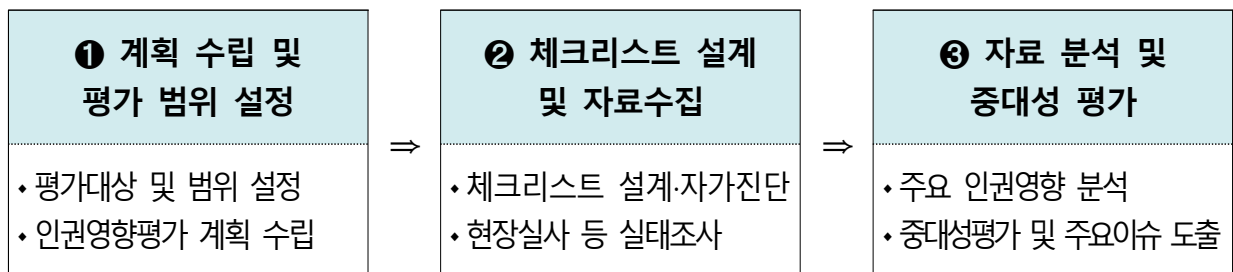
□ 전년도 개선과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

- '25년 인권경영 점검·진단*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과제의 조치계획을 마련하고, 조치결과를 차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에 반영
- * 인권영향평가, 조직문화진단, 성고충 대응체계 점검

구분	개선과제	조치계획	추진일정(안)
인권경영 체계	인권경영위원회 운영	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정기회의 개최	6~7월
인권교육	인권교육체계 정비	전 직원 인권교육, 관리자·고충처리 담당자 등 대상별 교육계획 수립·운영	~11월
고용상 비차별	노동관계 개정사항 반영 검토	남녀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 관련 개정 사항 내부규정 반영	9월
산업안전	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공유	사무공간·상담공간 등 주요 업무공간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, 개선 필요사항 조치·공유	10월
협력사 인권보호	인권보호 이행서약 적용 및 인권보호 이행 확인	계약단계 인권보호 이행서약 적용 및 인권침해 관련 민원·신고 발생 여부 확인	하반기
성고충 대응	2차 피해 방지체계 보완	관련 규정 점검, 스토킹·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항 반영	10월
감정노동자 보호	감정노동자 보호체계 마련	악성민원 대응절차, 상담 연계 등 감정노동자 보호 기준 마련	10월
환경권 보장	환경경영계획 수립	일회용품 저감, 녹색제품 구매, 에너지 절감 등 기관 여건에 맞는 실천과제 수립·실시	11월

□ '26년 인권영향평가 실시

- (추진목적)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
실제적·잠재적·부정적 인권리스크 파악 및 평가
- (추진시기) 9~11월
- (추진방법) 인권 지표개발·실태조사·지표교육, 현장실사, 중대성
평가 등을 통한 주요인권이슈 도출과 개선과제 선정
※ 인권영향평가의 전문성·투명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진행
- (추진절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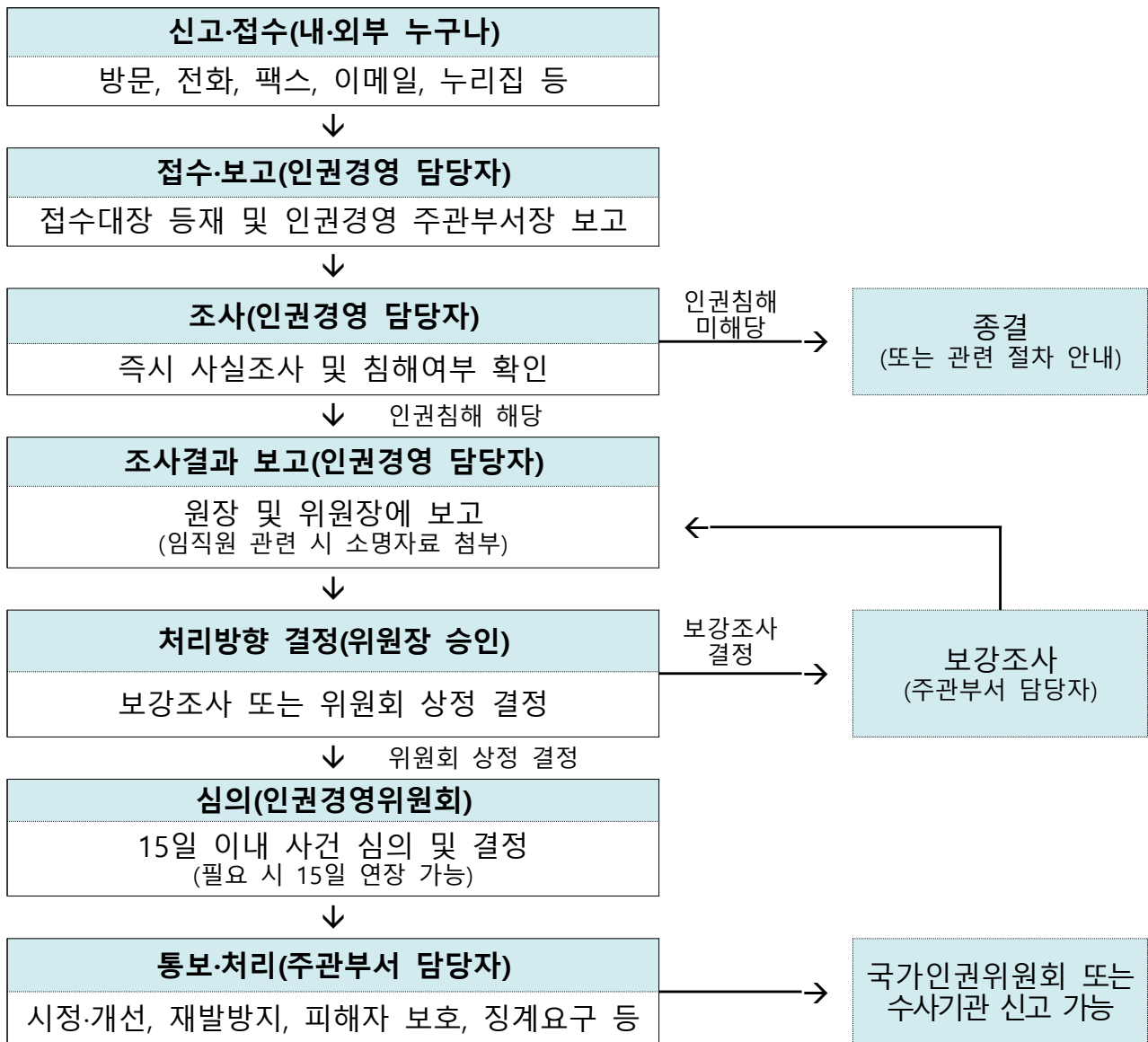


과제 3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및 구제절차 홍보 강화

□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

- (목적)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신속한 인지
및 피해자 보호와 권리회복 절차 지원
- (내용) 온·오프라인 신고 채널 운영 및 이메일 창구 신설
 - (기존) 누리집 통합신고센터, 청렴소리함 및 방문 신고, 진흥원 대표
전화·팩스, 내부 인권신고게시판 운영
 - (연계) 접수 사안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 등 관련 절차 연계
 - (신규) 이메일 신고 채널 신설(human@sjepa.or.kr)

○ (인권침해행위 처리절차)



※ 인권경영 이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처리절차

□ 인권침해 구제 절차 홍보

- (목적)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방법과 구제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내외 안내 강화
- (내용) 신고대상, 접수방법, 처리절차, 신고인·피해자 보호 원칙 등 안내
 - (내부) 그룹웨어 게시판 안내, 인권침해 신고·구제 절차 매뉴얼 공유
 - (외부) 누리집 통합신고센터 안내사항 보완, 신고·구제절차 SNS 홍보(카드뉴스)

과제 4 성고충 대응체계 및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체계 강화

□ 성고충 대응체계 강화

- (목적)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의 객관성·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,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
- (내용) 관련 법령을 준수*하고, 여성가족부의 지침**을 준용하여 「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관리규칙」 보완
 - * 양성평등법, 성폭력방지법, 여성폭력방지기본법 **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
- (판단기준 및 책무) 성희롱·성폭력·2차 피해의 정의, 적용범위, 기관장 책무 등 사건 판단과 예방 의무 관련 규정 보완
- (처리절차 및 보호조치) 상담·접수·조사·처리절차, 피해자 보호, 비밀유지, 불이익 조치 금지, 재발방지 등 사건 처리 및 후속조치 기준 명확화
- (심의체계) 성희롱 사건의 성립 여부, 피해자 보호조치,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근거 마련

□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체계 마련

- (목적) 민원·상담·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, 반복 민원, 부당요구 등으로부터 임직원 보호
- (내용)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대응기준 및 직원 보호조치 마련
 - (악성민원 예방)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금지 안내(문구 또는 음성)
 - (매뉴얼·교육) 고객과의 문제상황 대처방법, 사례 바탕 처리 절차, 사후조치 등 매뉴얼 마련 및 전파·교육
 - (보호조치) 폭언 등 발생 시 응대중단, 관리자 보고, 담당자 분리, 휴게시간 부여 등 직원 보호조치 기준 마련
 - (마음건강 지원) 피해 직원 상담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지원

과제 5 맞춤형 인권교육 및 상호존중 문화확산 활동

□ 맞춤형 인권교육 운영

- (목적) 임직원의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침해 예방·대응역량 강화
- (내용) 전 임직원 맞춤형 인권교육 연간 8시간* 이상 이수 * 법정 의무교육 포함
※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,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교육 활용

대상자	교육내용(안)
관리자	인권경영의 이해
전 직원	갑질/직장 내 괴롭힘/4대폭력(성희롱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)/아동학대 예방교육, 장애인인식개선 교육
상담원	감정노동자 보호 교육
인권담당자 (주관부서 담당자, 고충상담원 등)	사례로 보는 인권경영, 인권상담 교육, 공공기관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(여성가족부)

□ 상호존중 문화확산 활동

- (목적) 상호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확산
- (내용) 정례 캠페인과 전 직원 참여 활동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·갑질 예방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 인권존중 실천문화 확산
 - (상호존중의 날) 매월 11일 「상호존중의 날」 지정, 그룹웨어 내부 게시판을 활용한 인권·상호존중 캠페인 운영
 - (실천다짐 캠페인) 소통과 공감의 날과 연계하여 전 직원 대상 상호존중 실천 다짐 캠페인
 - ※ 존중언어 사용, 지위관계 우위에 따른 부당한 지시 금지, 성희롱성폭력 예방, 동료 간 배려 등
 - (인권경영 정보공유) 인권경영 추진계획, 인권영향평가 주요결과, 개선과제 이행 현황 등을 그룹웨어에 공유하여 직원 인식 제고 및 참여 유도

과제 6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인권경영 수준 관리

□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이행관리

- (목적) 진흥원 사업과 계약 수행과정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인 사전 확인 및 협력사의 인권준중 의무 이행 유도
- (내용) 협력사 인권준중의무 이행 유도 및 인권보호 준수 실태 모니터링 실시
 - (서약징구)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 대상 인권준중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
 - (이행점검) 부서별 협력사 중 일부 선정, 체크리스트 기반 안전보건·노동권·인권보호 준수 여부 서면점검

□ 인권경영 수준관리 및 정보공개

- (목적) 인권경영 인증기준에 따른 진흥원의 인권경영 운영수준을 점검하고, 주요 추진실적 공개를 통한 인권경영 책임성 확보
 - (내용) 인권경영 인증 취득을 위한 사전점검, 증빙자료 정비, 인증 심사 대응 및 인권경영 주요 정보 공개
 - (인증기준 점검) 인권경영 체계, 인권영향평가, 구제절차, 인권교육,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등 인증기준별 충족 여부 확인
 - (증빙자료 정비) 인권경영 추진계획, 위원회 운영, 인권영향평가, 교육 이수, 신고·구제채널 운영, 개선과제 조치현황 등 인증심사 자료 정비
 - (인증심사 대응) 인권경영 인증 신청,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대응,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확인
 - (정보공개) 인권경영 추진계획, 인권영향평가 결과, 위원회 개최 결과 등 누리집·그룹웨어·경영공시 해당 항목 등에 공개
- ※ 개인정보, 신고·상담 내용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제외

V. 추진일정

전략 방향	추진 과제	실행계획	월별 추진일정											
			1	2	3	4	5	6	7	8	9	10	11	12
(전략방향) 인권경영 운영체계 정착														
(과제1) 인권경영 운영 및 추진체계 정착														
		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역할 정비												
		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운영												
(과제2)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이행														
		전년도 개선과제 조치계획 수립·이행												
		'26년 인권영향평가 실시												
(전략방향) 인권침해 예방·구제체계 강화														
(과제3)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및 구제절차 홍보 강화														
		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												
		인권침해 신고 이메일 창구 신설·안내												
		인권침해 신고·구제절차 홍보												
(과제4) 성고충 대응체계 및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체계 강화														
		성고충 대응체계 강화												
		고객응대근로자 보호체계 마련												
(전략방향) 인권존중 조직문화 확산														
(과제5) 맞춤형 인권교육 및 상호존중 문화확산 활동														
		맞춤형 인권교육 운영												
		상호존중 문화확산 활동												
(과제6)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인권경영 수준 관리														
		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이행관리												
		인권경영 인증 추진												
		인권경영 정보공개												

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

